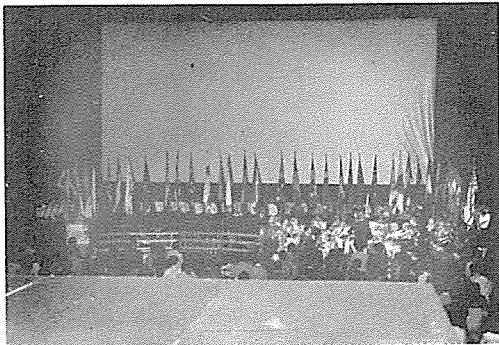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제 9 차 W.C.P.T총회에 다녀와서

김 용 주



1982. 5. 24. W.C.P.T總會를 爲해 參席한 國家들의 旗를 들고 入場한 旗手들. 앞엔 國立交響樂團과 各國 代表들이.

켄야, 잠비아 등 60여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소련을 제외한 동구권의 많은 공산국가들에서도 대표가 왔었고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Rehabilitation Activities에 대한 film소개는 많은 흥미를 끌었다.

참가인원수는 약 6,000여명이었는데 이중 물리치료사가 5,000여명이었고 나머지는 재활분야 의사, 간호원, 언어치료사, 심리지도원, 보장구제작자 등이었다.

인구 80여만의 Stockholm시는 어디를 가나, 참가명패뱃지를 달고 다니면 W.C.P.T.Congress에 왔느냐고 하면서 친절히 대해 주었고 시전체가 W.C.P.T일색이었다.

금번 9차총회는 회장단선거가 있었는데 새로 선출된 이사국은 미국, 일본, 나이지리아이고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Miss List; West Germany, 제 1부회장 : Miss ODEHN; Sweden, 제 2부회장 : Mr. Teager; England, 제 3부회장 : Mr. Tiranasaki; Thailand

특히 W.C.P.T 50여년 역사상 아세아권에서 부회장이 선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금번 9차 총회는 Official Congress of W.C.P.T였기 때문에 각국 정대표들은 만 4일간 각종 안전증, 예산심의 회비인상, 신규가입, 윤리강령등의 심의로 그 좋은 많은 연제발표와 각시설 병원 및 교육기관 시찰에도 참석치 못하고 꼬박 4일간 총회에 참석하여야 했다.

자유중국의 신규가입전에 대하여는 많은 나라들이 자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등 정치성을 띠기도 했으나 W.C.P.T의 기본정신에 입각 순수한 학술 및 친선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다수결로 가입이 결정되었다. 회비는 현행 1인당 25펜스를 40펜스로 인상하되 앞으로 4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 5% 이내에서의 인상 허용범위를 정했다.

Sweden 시장의 초대만찬회는 유명한 "노벨"상이 수여되는 Stockholm 시청 대홀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우리나라 협회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할 것이나, 구미 여러나라의 물리치료사들은 나름대로의 좋은 환경속에서 마음껏 그들의 직종에 충실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부러웠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의 전공이 무엇이나고 물어왔다. 즉, 정형외과 분야나, 신경외과 또는 중추성 신경장애분야, Sports P.T등 모두가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직종인으로서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었다.

우리 협회에서도 앞으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자체교육을 더 많이 힘써야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금번 서로간은 "Main in Action"이었고 From idea to reality의 방향으로 전문직종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Science

를 기반으로 한 Art profession을 하자는 것이었다. 많은 나라의 친구들과 사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활동양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소득이라고 하겠다. 차기 10차 총회는 인도의 Bombay에서 1986년에 갖기로 하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9차총회는 막을 내렸다.

(본협회 부회장, 신구전문대 주임교수)

醫 療 技 士 法

1982.3.23 改正

第1條【目的】 이 법은 醫師·齒科醫師의 指導下에 診療 또는 醫化學的 檢査에 從事하는 者(以下 “醫療技士” 라 한다)의 資格 免許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保健 및 醫療向上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醫療技士의 種別】 醫療技士의 種別은 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및 齒科衛生士로 한다.

第3條【醫療技士의 業務範圍等】 醫療技士의 種別에 따르는 業務의 範圍와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免許】 ① 醫療技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種別에 따르는 醫療技士國家試驗(以下 “國家試驗” 이라 한다)에 合格한 後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에 關한 學問을 專攻하는 專門大學以上의 學校를 卒業한 者

2. 專門大學以上의 教育課程을 履修한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1年 以上 修習한 者

3. 高等學校 以上의 學校를 卒格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다고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者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取得하고자 하는 免許에 相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3年 以上 修習한 者

4.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第1號와 同等 以上의 教育課程을 修習한 者

5. 保健社會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의 該當醫療技士의 免許를 받은 者

② 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의 指定과 保健醫療業務에 關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5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는 醫療技士의 免許를 하지 아니한다.

1. 精神病者·心身薄弱者

2. 聾者·啞者·盲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醫 技士로서 不適當한 不具廢疾者 또는 麻藥 其他 有毒物質의 中毒者

5.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型의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第6條【國家試驗】 國家試驗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年 1回 以上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實施한다.

第7條【應試資格의 制限等】 ① 第5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② 不正한 方法으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關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는 그 受驗을 停止시키거나 合格을 無効로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停止되거나 合格이 無効로 된 者는 그 後 2回에 限하여 第6條의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第8條【免許의 登錄】 ① 賜給社會部 長官은 醫療技士의 免許를 할 때에는 醫療技士의 種別에 따르는 免許令에 그 免許에 關한 事項을 登錄하고 免許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②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9條【秘密漏泄의 禁止】 醫療技士는 이 법 또는 다른 法令에 特히 規定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業務上 知得한 他人의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第10條【申告】 醫療技士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을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의 2【補修教育】 醫療技士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第11條【無免許者의 業務禁止等】 ① 이 법에 의한 醫療技士가 아니면 醫療技士의 業務를 行하지 못한다. 다만, 第4條 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修習中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此를 除外한다.

② 이 법에 의한 醫療技士가 아니면 醫療技士의 名稱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12條【免許의 取消等】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한다

1. 第5條 第1號 내지 第4號에 該當하게 된 때.

2. 禁錮以上의 刑을 받은 때.

3. 免許를 貸與한 때.

4.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停止處分期間中에 醫療技士의 業務를 行하거나 3回 以上 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② 醫療技士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免許가 取消된 後 그 處分의 原因이 된 事由가 消滅하거나 改悛의 情이 顯著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保健社會部官은 그 免許를 再 交付할 수 있다.

第13條【就業의 停止】 ① 保健社會部 長官은 醫療技士가 甚한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거나 그 免許 또는 業務에 關하여 廣告行爲를 하거나 正當한 事由없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 하거나 第1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就業을 停止시킬 수 있다.

② 第1項의 品位損傷行爲의 範圍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의 2【醫務記錄士】 ① 醫務에 關한 記錄을 주된 業

務로 하는 者를 말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第4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醫務記錄士 國家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社會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醫務記錄士에 관하여는 第3條, 第5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醫療技士”는 “醫務記錄士”로 본다.

第14條【權限의 委任】이 法에 의한 保健社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5條【罰則】第9條(第13條의 2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1條 第1項 本文 또는 第2項(第13條의 2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醫療技士의 免許證을 貸與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9條(第13條의 2 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7條【兩罰規定】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또는 第16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課한다.

第18條【施行令】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後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臨床病理士·엑스線士·齒科技工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 또는 齒科衛生上의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該 當醫療技士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同前】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衛生士 또는 衛生試驗士의 免許를 받은 者는 마로 그에 관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從前의 醫療補助員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効力을 가진다.

④【廢止法律】醫療補助員法은 이 法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附 則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醫務記錄士에 관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 당시 醫務記錄士의 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者는 第13條의 2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3年 12月 31日까지 계속 그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982. 6.30 "스포츠 임상 의학회"에 회장단 참석
장 소: 대한체육회관 강당

일 시: 1982.6.30 PM 2:00~PM 5:30

1982. 7. 2 협회 보사부 2차 감사 받음

감사반: 의료제도과 정경수 외 1명

1982. 7. 4 PM 6:30~PM 3:30 제 4차 정기 이사회 개최
참석: 정진우, 석일현, 배승학, 강정구, 황환익, 함용운, 백진

안건: ① 학술지발간: 원고 마감 1982. 7.31
까지

※ 종합병원과 학교만 독촉공문 발송

② <학술대회> 발표자: 학술지 원고 제출자 전원

특 강: 학회장에게 일임

참가비: 8,000원(숙박 및 자료대 포함).

중앙회 지원금: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③ 먼허소지자 일제신고

① 미가입회원: 신규가입으로 만처리

② 홍보 문제: 기관지에 내는 것으로 한정.

④ ACPT총회 준비위원 선정: 김용주 부회장에게 일임.

⑤ 고문번호사 선임의견: 백진 직전회장에게 위임.

⑥ 대의원총회: 정기총회로 학술대회와 겸한다.

⑦ 선거직 임원 임후보 등록

① 시 한: 1982.9.15

② 장 소: 협회사무국

③ 등록비: 회 장: 10만원

부회장: 5만원

감 사: 면제

1982. 7.14-15 총무이사 경북지부 방문

내용: 1) 지부감사실시

2) 학술대회 및 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업무 결정

1982. 7.26 (가칭) 대한스포츠임상물리치료학회 발기모임.

시간: 1982. 7.26 PM 6:30~PM 8:30.

장소: 우신향병원

참석: 석일현, 양성주, 정진우, 김형섭, 박찬의, 김정숙, 배승학, 함용운

결의내용: ① 준비위원장 및 임원 선임

준비위원장: 석일현

부위원장: 김형섭

총 무: 표성봉

② 정관 및 발기대회에 관련사항: 준비위원장에게 일임.

1982. 7.29 PM 6:30~PM 8:00 중앙회 소속 분회장 모임.

참가: 동부분회장, 중부분회장, 서부분회장, 북부분회장, 성남분회장.

불참: 남부분회장.

안건: ① 먼허소지자 일제신고에 대한 세부지침 전달

② 각 분회 제반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③ 분회총회 및 대의원, 분회장 개선에 관한 사항

<회비 납부자>

1982. 7. 31 현재

전경훈 (No. 905 82년 미취업 반액)
 강원자 (No. 76, 78, 79, 80, 81, 82년 미취업 반액)
 이상빈 (No. 103 82년) 경봉수 (No. 520 80년)
 나영희 (No. 424 79, 80년)
 허길순 (No. 632 80, 81년)
 김춘숙 (No. 6 82년, 마취업 반액)
 김지혜자 (No. 30 82년, 마취업 반액)
 김용한 (No. 150 81, 82년)
 김인숙 (No. 460 79, 80, 81년, 82년 미취업 반액)
 이재학 (No. 173 82년)
 박찬의 (No. 175 82년)
 오승열 (No. 259 입회비, 81년 미취업 반액, 82년)
 강명혜 (No. 901 82년 미취업 반액)
 이귀옥 (No. 525 82년 미납된 반액 완납)
 최재청 (No. 447 82년 반액완)
 문영월 (No. 563 82년)
 함해숙 (No. 371 80, 81, 82 미취업)

<영구회비 납부자>

오석교 (No. 38 12만원 납부)

-경남 및 부산지부 회원 회비 납부 현황-

오상열 (No. 77 81년)	홍성균 (No. 488 82년)
고주일 (No. 62 82년)	이상근 (No. 834 82년)
위석희 (No. 33 82년)	이현문 (No. 591 82년)
최대림 (No. 99 81, 82년)	김영대 (No. 932 82년)
황형교 (No. 50 82년)	신은범 (No. 518 82년)
임광수 (No. 238 82년)	이경희 (No. 638 80, 81, 82년)
이복순 (No. 148 82년)	장수희 (No. 82년)
안소윤 (No. 357 82년)	김영찬 (No. 82년)
유재관 (No. 338 82년)	서명숙 (No. 567 82년)
채병기 (No. 265 82년)	김영철 (No. 540 82년)
권영옥 (No. 740 82년)	천봉술 (No. 350 79, 80, 81, 82년)
박종주 (No. 81년)	양명옥 (No. 82년)
	송보근 (No. 558 82년)

<운영비 찬조금>

- 집담회시 회원 참가등록비
 회원 39명 × 2,000원 = 78,000원
- 회장단찬조 (집담회시 회원 40명 간식비) ₩ 21,600
- 6월 13일 회원 친목 야유회시
 참가비 19명 × 3,000원 = 57,000원

<기금 찬조금>

- 석일현 (집담회시 강의료 회사) ₩ 50,000
- ※ Musculo-skeletal Evaluation에 대한 Slide 제작
 1982.6.25일 개최한 집담회에 사용한 Musculo skeletal evaluation에 관한 slide가 석일현 선생님의 제작, 기증으로 협회에 비치되어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 하오니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입회원>

1982. 7. 31 일 현재 입회등록을 필한 추가 신입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근환 (No. 1161)	김정숙 (No. 1149)	임미숙 (No. 1024)
이규철 (No. 1068)	염승룡 (No. 1243)	김명순 (No. 1032)
허준 (No. 1245)	하행숙 (No. 1126)	정중희 (No. 1036)
유천실 (No. 1133)	박상은 (No. 1167)	한재광 (No. 1043)
염기애 (No. 1176)	송명규 (No. 1236)	이희선 (No. 1049)

이규리 (No. 1165)	김영식 (No. 1137)	허재관 (No. 1140)
김호봉 (No. 1239)	김희수 (No. 1152)	김창배 (No. 1140)
유봉연 (No. 1202)	오영신 (No. 1179)	김영애 (No. 1233)
석옥경 (No. 1124)	남성우 (No. 1101)	장정희 (No. 1185)
박현숙 (No. 1139)	정영란 (No. 1238)	도현숙 (No. 1244)
구연업 (No. 1206)	임기태 (No. 1166)	김학재 (No. 1226)
김명숙 (No. 1129)	이순자 (No. 1223)	김선희 (No. 1111)
노종실 (No. 1173)	조현자 (No. 1229)	이창태 (No. 1184)
김승규 (No. 1234)	최경자 (No. 1028)	이승에 (No. 1053)
이희주 (No. 1071)	서감우 (No. 1227)	장해영 (No. 1057)
송춘숙 (No. 1091)	권혜영 (No. 1237)	박경옥 (No. 1155)
박혜정 (No. 1170)	정윤숙 (No. 1193)	최명희 (No. 1061)
오태영 (No. 1220)	김철규 (No. 1144)	김영균 (No. 1070)
박동진 (No. 1078)	김양선 (No. 1231)	김영란 (No. 1073)
최승선 (No. 1162)	안승우 (No. 1038)	김중식 (No. 1079)
이성희 (No. 980)	채원명 (No. 1158)	김명희 (No. 1086)
배노갑 (No. 1242)	김정태 (No. 1117)	최영록 (No. 1093)
박희열 (No. 1230)	신송의 (No. 1108)	송승영 (No. 1102)
문현숙 (No. 1241)	황경자 (No. 962)	문연심 (No. 1112)
이경자 (No. 1115)	오강교 (No. 972)	김상수 (No. 1118)
정혜현 (No. 1110)	손희영 (No. 976)	김경애 (No. 1128)
최덕호 (No. 1213)	최향희 (No. 991)	신종찬 (No. 1131)
정난영 (No. 1153)	홍정옥 (No. 998)	서광운 (No. 1141)
오경환 (No. 1098)	이창기 (No. 1007)	송강근 (No. 1143)
이은진 (No. 1099)	위종곤 (No. 1013)	박상조 (No. 1146)
		박춘서 (No. 1150)









Kodak E M G PAPER
Li nagraph direct print paper
 TYPE 1895

물리치료기구제작 재활기구 오파및수입판매

새한販売商社
金 東 赫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31
 醫療器供給會館 401号
 電話 762-5659 · 763-468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